

1. 개정 이유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매매·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II 제1호 위반행위란 아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4조제1항에서 금지한 마약류 투약·매매·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교사와 방조를 포함)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